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그린하이브리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6조 (출금이체) ① ~ ④ (생략)</p> <p>⑤ 결제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순위는 체크카드 발급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p> <p>⑥ ~ ⑦ (생략)</p> <p>제7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제 예치금 및 카드사가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p>	<p>제6조 (출금이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결제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을 경우 <u>출금 우선순위는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합니다</u></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 (당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제 예치금 및 카드사가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u>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u></p>	<p>- 공정위 변경 명령에 따른 개정금융회사임의로 출금순서를 정하는 조항</p> <p>- 공정위 변경 명령에 따른 개정통지없는기한이익상실 조항</p>